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을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605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법체계를 위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립지원 대상자의 범위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조문 정비(영 제38조)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비대상

대통령령 제 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자립지원) ① (생략) <u>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u> <u>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u> <u>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u> <u>3.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u>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연 락 처	(044) 202 - 3443, 3444